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5.]

[고용노동부령 제402호, 2023. 12. 5., 일부개정]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시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사업주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만을 공시하도록 하였고, ‘사업장별’ 공시의무는 삭제하였습니다.

### 관련구성원

####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 박성기

변호사

02-316-4280

skipark@shinkim.com

#### 이세리

변호사

02-316-4034

srlee@shinkim.com

####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

#### 윤혜영

변호사

02-316-4491

hyyun@shinkim.com

#### 송우용

변호사

02-316-1696

wysong@shinkim.com

김종현

변호사

02-316-1721

johkim@shinkim.com

---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